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- 사업명: 스마트 제조장비 실증실험동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
- 발주기관: 한국기계연구원
-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익스트리네트워크코리아(유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스마트 제조장비 실증실험동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계획」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(또는 공급사(기술지원사)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**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-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<신설 2009.9.21.>
-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 <신설 2009.9.21.>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“발주기관”과 “제조사 또는 공급사”가 협의하는 금액 삼천팔백삼십구만원(38,390,000원) 이내로 한다.
※협약범위 :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
<신설 2009.9.21.> ※협의금액은 부가세 포함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계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“제조사 또는 공급사”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“제조사 또는 공급사”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계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제3조에서 이동 2009.9.21.>

2023년 03월 29일

발주기관
제조사 또는 공급사

한국기계연구원

익스트리네트워크코리아(유)

